입양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양]

『입양』 콘텐츠에서는 국내입양(일반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 보호대상아동 입양)과 국제입양(국외로의 입양, 국내로의 입양)의 성립요건, 입양의 절차 및 효력, 입양 무효 · 취소 및 파양의 절차 및 각각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입양 이후 제공되는 사후관리 서비스, 입양정보 공개 청구, 아동의 권리 보장 등에 대한 법령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입양 1
1. 국내입양 4
1.1. 일반양자 입양 4
1.1.1. 일반양자 입양의 자격 4
1.1.2. 일반양자 입양의 절차와 효과 5
1.1.3. 일반양자 입양의 무효 8
1.1.4. 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9
1.1.5. 일반양자 파양 13
1.2. 친양자 입양 15
1.2.1. 친양자 입양의 자격 15
1.2.2. 친양자 입양의 절차와 효과 16
1.2.3. 친양자 입양의 취소 18
1.2.4. 친양자 파양 19
1.3. 보호대상아동 입양 20
1.3.1. 보호대상아동 입양의 자격 20
1.3.2. 보호대상아동 입양의 절차와 효과 23
1.3.3. 보호대상아동 입양의 취소 26
1.3.4. 보호대상아동 입양 등에 대한 지원 27
2. 국제입양 30
2.1. 외국으로의 입양 30
2.1.1. 외국으로의 입양 자격 30
2.1.2. 외국으로의 입양 절차와 효과 31
2.1.3. 외국으로의 입양 등에 대한 지원 34
2.2. 국내로의 입양 37
2.2.1. 국내로의 입양 자격 37
2.2.2. 국내로의 입양 절차와 효과, 지원 등 38
2.2.3. 국내로의 입양 취소 40

1. 국내입양

1.1. 일반양자 입양

1.1.1. 일반양자 입양의 자격

양부모가 될 자격

양부모의 자격요건

-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6조).
-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제1항).
  - 피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19세 미만)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제2항 및 제867조).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입양하려는 것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3조제3항).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민법」 제874조제1항).

> **Q. 일반양자 입양을 준비 중입니다. 미혼인 경우에도 입양을 할 수 있나요?**
>
> A. 네, 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반드시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일반양자 입양의 경우 양부모가 반드시 부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년이라면 남녀를 불문하고 미혼인 경우에도 단독으로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6조).
>
> 다만, 일반양자를 입양하는 당시 배우자가 있다면 반드시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민법」 제874조제1항).

양자가 될 자격

양자의 자격요건

-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합니다(「민법」 제877조).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

-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민법」 제869조제1항).
  -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9조제5항).
-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합니다(「민법」 제869조제2항).
  - 법정대리인의 승낙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9조제5항).
-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더라도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9조제3항 및 제4항).
  -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이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해야 함)

-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이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해야 함)(「민법」 제870조제2항)
  - √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 않은 경우
  - √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동의

-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70조제1항 본문).
  - 부모의 동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0조제3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870조제1항 단서).
  - 부모가 「민법」 제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민법」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입양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0조제2항).
  -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71조제1항 본문).
  -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871조제1항 단서).
-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1조제2항).

피성년후견인 입양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동의

-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되려는 것에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의 동의(「민법」 제871조제1항)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3조제3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입양에 대한 배우자의 동의

- 배우자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4조제2항).

1.1.2. 일반양자 입양의 절차와 효과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미성년자의 입양허가 청구

▪ 미성년자(19세 미만)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7조제1항).

▪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7조제2항).

입양허가 절차

▪ 가정법원은 입양의 허가 심판을 할 때 그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9제1항).

- 양자가 될 사람(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
-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민법」 제870조에 따라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
-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 양부모가 될 사람
- 양부모가 될 사람의 성년후견인

▪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9제2항).

- 양부모가 될 사람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양부모가 될 사람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세청장에게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
-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육능력과 관련된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진료기록자료

입양신고

신고자

▪ 입양신고는 입양의 당사자가 해야 하며,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 신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지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도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신고방법

▪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① 신고해야 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② 신고해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③ 신고인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 입양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31조).

▪ 입양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며, 이때 입양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이 처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

신고의 기간 및 장소

▪ 입양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입양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입양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1조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양식 제4호).

▸ 당사자(양부모와 양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입양에 대한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나 승낙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면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

▪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

입양신고의 심사

▪ 시·읍·면·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은 입양신고서를 심사하여 입양의 요건, 입양신고의 방식,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입양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881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입양의 효과

입양의 효력 발생

▪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78조).

법적 혈족관계의 발생

▪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민법」 제882조의2제1항).

▸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됩니다.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772조제1항 및 제2항).

▪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단서).

종래의 친족관계 유지

▪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됩니다(「민법」 제882조의2제2항).

양자의 성과 본

▪ 일반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인 자녀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단서).

Q1.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양자로 키우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입양이 인정되나요?

A1. 아닙니다, 법적으로 입양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78조), 양자가 미성년자라면 입양신고에 앞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7조제1항).

따라서 양자가 양부모의 친생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 입양을 진행해야 합니다.

Q2. 일반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의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일반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의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김과 동시에, 일반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되어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민법」 제974조 및 제880조의2제2항 참조).

따라서 양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쌍방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1.3. 일반양자 입양의 무효

입양 무효 사유 및 의의

입양 무효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입양신고를 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미성년자(19세 미만)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민법」 제867조제1항 및 제873조제2항)
3.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869조제2항)
4.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민법」 제877조).

입양 무효의 의의

▪ 입양 무효의 사유가 있으면 그 입양은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

입양 무효의 소

입양 무효의 청구

▪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입양으로서 누구나 입양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입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5)].

관할법원

▪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제1호).

입양 취소의 소의 상대방

▪ 양부모나 양자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나 양자의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고,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제1항 및 제3항).

▪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와 양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며,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신청

▪ 입양 무효의 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입양 무효의 효과

친족관계의 소멸

▪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입양으로서 입양으로 발생된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친족관계는 소멸됩니다.

▪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통해 양부모의 사항은 더 이상 기재되지 않고, 친생부모만이 기재되므로 과거의 입양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에는 입양의 무효에 관한 사실이 나타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호).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입양이 무효로 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7조 및 제806조제1항).

▸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되고,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6조제2항 및 제3항).

▪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입양당사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3) 및 제50조제1항].

1.1.4. 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입양 취소의 원인 및 청구권자

취소 청구권의 행사

▪ 입양 취소는 입양 취소의 원인이 있더라도 입양 취소의 의사표시만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

▪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2항 및 제867조제2항).

취소 사유, 취소 청구권자 및 제소기간

▪ 입양 취소 사유와 사유별 취소 청구권자 및 제소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양 취소 사유	취소 청구권자	제소기간
미성년자(19세 미만)가 양자를 입양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66조)	양부모·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민법」 제885조)	• 양부모가 성년에 달한 후에는 취소 청구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889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69조제1항)	양자 또는 동의권자(「민법」 제886조)	•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제1항).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69조제3항제2호)		
법정대리인의 동의(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나 입양의 승낙(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이 없음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0조제1항제1호)		
미성년자의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없었음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제8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1조제1항)	동의권자(「민법」 제886조)	• 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제2항).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3조제1항)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민법」 제887조)	• 양자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3조).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배우자 있는 사람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거나,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양자가 된 때(「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4조)	배우자(「민법」 제888조)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2호)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민법」 제896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3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민법」 제884조 제1항제3호)	

입양 취소의 소

관할법원

▪ 입양 취소의 소는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제2호).

입양 취소의 소의 상대방

▪ 입양 취소 원인에 따른 취소 청구권자가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양부모나 양자 중 어느 한쪽이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나 양자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며,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제1항 및 제3항).

▪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와 양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며,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입양 취소의 효과

입양 취소의 신고

▪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해야 하며, 입양 취소의 소의 상대방도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58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입양이 취소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7조 및 제806조제1항).

▸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되고,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6조제2항 및 제3항).

▪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입양당사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3) 및 제50조제1항].

1.1.5. 일반양자 파양

협의상 파양

협의상 파양의 신고

▪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제904조 및 제878조).

▪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19세 미만)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의 협의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8조 단서).

▸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2조).

▪ 파양 신고는 파양의 당사자가 해야 하며, 파양 신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지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도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① 신고해야 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② 신고해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③ 신고인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협의상 파양의 무효

▪ 당사자 사이에 파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협의상 파양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98조).

▪ 협의상 파양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가정법원에 파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및 제23조).

협의상 파양의 취소

▪ 협의상 파양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파양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04조, 제82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1)].

▪ 협의상 파양 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1) 및 제50조].

▪ 조정이 성립하면 파양 취소의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파양무효 또는 파양취소의 판결에 따라 당사자는 그 판결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재판상 파양

재판상 파양의 사유

- 양부모와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파양 청구권자

-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의 승낙(「민법」 제869조제2항)을 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1항 본문).
  - 만약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등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1항 단서 및 제777조).
-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입양에 동의(「민법」 제870조제1항)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2항 본문).
  -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2항 단서).
-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3항).
-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4항).

파양 청구권의 소멸

- 재판상 파양의 사유 중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905조제3호)로 인한 파양의 소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7조 참조).
- 그 밖의 사유(「민법」 제90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인한 파양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07조).

심리

- 재판상 파양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2) 및 제50조].
- 조정이 성립하면 파양의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재판상 파양의 신고

▪ 재판상 파양의 청구의 인용판결이 있을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파양신고를 해야 하며, 소송의 상대방도 파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58조).

▪ 파양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만 기재될 뿐 양부모는 기재되지 않지만, 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에는 파양사실이 기재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호).

파양의 효과

친족관계의 소멸

▪ 파양을 하면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776조).

▪ 양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양자를 파양한 경우 그 친족관계의 종료가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손해배상 청구

▪ 재판상 파양으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 및 제806조제1항).

▹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되고,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가 아니라면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6조제2항 및 제3항).

▪ 재판상 파양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3) 및 제50조].

1.2. 친양자 입양

1.2.1. 친양자 입양의 자격

친양자가 될 자격

친양자의 자격요건

▪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19세 미만)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2호).

친생부모의 동의

▪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본문).

▪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

> Q.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 **A.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차이점은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일반양자	친양자
근거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성립요건	협의로 성립	재판으로 성립
양자의 성·본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입양의 효력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

-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4호).
-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5호).
-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어도 입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2항).
  - ①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아래의 ② 또는 ③의 사유가 있어야 함
  - ②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 ③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될 자격

양부모의 자격요건

-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본문).
-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단서).

1.2.2. 친양자 입양의 절차와 효과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입양허가의 청구

-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자는 친양자 입양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

▪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이 친양자로 될 사람의 복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친양자 입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3항).

친양자 입양신고

입양신고

▪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이 확정된 경우 친양자 입양청구를 한 사람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8조 및 제58조).

입양의 효과

혼인 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4조 본문).

▪ 다만, 양부모가 혼인신고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4조 단서).

법적 혈족관계의 발생

▪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되며, 친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친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8 및 제772조).

▪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단서).

▪ 친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깁니다(「민법」 제974조).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본문).

▪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때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단서).

▹ 친족관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인 혈족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의 혈족과의 근친혼금지 규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민법」 제809조제1항 참조).

Q1. 친양자 입양 후 법적으로 친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1. 친양자는 입양이 성립되면 친생부모와의 가족관계 및 친권은 모두 종료되고, 친권은 양부모에게 귀속됩니다.

즉,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청구에 따라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되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및 제2항 본문).

Q2.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라는 사실이 표시되나요?

A2.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지면,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가 양부모의 자녀로 표시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6조제1항).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단순히 자녀로만 표시되고, 친양자라는 사실은 별도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6조제2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없고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또한, 본인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 단서).

1.2.3.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 입양 취소의 소

입양 취소의 청구

▪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4제1항).

▪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에 따라 성립하므로, 일반양자 입양에 적용되는 입양무효에 관한 규정(「민법」 제883조)과 입양취소에 관한 규정(「민법」 제884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4제2항).

입양 취소의 소의 상대방

▪ 양부모와 양자가 상대방이 되고, 그중 어느 한쪽이 사망을 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며,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및 제24조).

관할법원

▪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

심리

▪ 친양자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3) 및 제50조].

▪ 조정이 성립하면 입양 취소의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3) 및 제50조].

입양의 취소청구 기각

▪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심사하여 친양자 입양취소가 친양자의 복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친양자 입양취소를 판결하고, 친양자 입양취소가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친양자 입양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6 및 제908조의2제3항).

입양 취소의 신고 및 효과

친양자 입양 취소의 신고

▪ 친양자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소의 상대방도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69조제1항).

친양자 입양 취소의 효과

▪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되며, 이 경우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은 친양자 입양성립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7).

▪ 친양자 입양 취소 신고에 따라 친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4조 및 제10조).

1.2.4. 친양자 파양

친양자 파양의 소

파양의 사유

▪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1항).

-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 일반양자의 협의상 파양 및 재판상 파양 사유는 친양자 파양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2항).

파양의 소의 상대방

▪ 파양의 청구는 양부모,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 검사가 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따라 그 상대방이 달라집니다(「민법」 제908조의5제1항, 「가사소송법」 제31조 및 제24조).

관할법원

▪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

소송 절차의 승계

▪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16조).

심리

▪ 친양자 파양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4) 및 제50조].

▪ 조정이 성립하면 친양자 파양의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파양의 청구 기각

▪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심사하여 친양자 파양이 친양자의 복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친양자 파양을 확정판결하고, 친양자 파양이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90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친양자 파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6 및 제908조의2제3항).

파양의 신고 및 효과

파양의 신고

▪ 친양자 파양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소의 상대방도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및 제3항).

파양의 효과

▪ 친양자 파양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됩니다(「민법」 제908조의7제1항).

▪ 친양자 파양신고에 따라 친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0조).

1.3. 보호대상아동 입양

1.3.1. 보호대상아동 입양의 자격

양자가 될 자격

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로서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 ※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 시·도지사등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정하기 전에 입양의 동의 및 승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친생부모의 동의 의사(「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와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2항).

-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시·도지사등은 양자가 될 아동이 결정된 후부터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을 분기마다 점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양육상황 점검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

▪ 양자가 될 아동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양의 승낙을 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1.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입양허가 청구 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여부 결정 전에 13세에 달한 경우에도 같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2.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 위 1.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위 2.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승낙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

▪ 가정법원은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에 따른 동의 또는 위 2.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입양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함). 이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 양자가 될 아동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 친생부모가 위 1.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위 2.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위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

▪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입양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친생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요건
>
> -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은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되고 표시되며, 양자가 될 아동(13세 미만)에 대한 입양의 승낙과 친생부모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제1호).

양부모가 될 자격

양부모의 자격요건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제2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 양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
- 양자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다음 내용의 범죄경력이 없을 것
  -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경력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경력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위반한 죄에 따른 마약범죄경력
-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

양부모교육 이수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부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Q.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아동대상을 입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꼭 받아야 하나요?

A. 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아동대상을 입양하려는 양부모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

양부모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입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 입양아동 등 자녀의 양육방법
-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양부모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2. 보호대상아동 입양의 절차와 효과

입양의 신청 및 결연

입양의 신청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입양신청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 가정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직장·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조사해야 하며, 그 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조사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위에 따른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와 자료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사실을 왜곡·은폐·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3항).

양부모와 양자가 될 사람의 결연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본문).

▪ 결연 이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및 양자가 될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결연확인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입양허가 청구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6조).

입양허가 청구 서류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3.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4. 결연확인서
5.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6.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7.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조회회신서
8.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

※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위 7.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여야 함

입양허가 여부 결정

▪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해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

▪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 양육능력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5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입양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을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2호).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임시양육결정

▪ 가정법원은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 입양허가를 청구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그 결정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

▪ 임시양육결정이 있는 경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되며,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임시양육결정의 취소

▪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허가의 청구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는 등 양자가 될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입양에 대한 동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 후 조치

▪ 위 2. 또는 3.의 사유로 임시양육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아동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할 당시의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3항).

▪ 위 1. 또는 4.의 사유로 임시양육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4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양허가를 신청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4항 단서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아동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아동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 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양의 효과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 친양자 지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국내입양-친양자 입양-친양자 입양의 절차 및 효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효력발생

▪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양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 Q. 보호대상아동 입양 시 양자의 성과 본은 꼭 변경해야 되나요?
>
> A. 네, 보호대상아동 입양시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그 효과는 성과 본에 있어서 「민법」상의 친양자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합니다.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는 경우 친양자는 양부 또는 양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및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4조).

아동의 인도

▪ 아동의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확정 또는 임시양육결정 후 양자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직접 인도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1.3.3. 보호대상아동 입양의 취소

입양 취소의 소

입양 취소의 청구

▪ 양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자신의 동의 없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입양 취소의 소의 상대방

▪ 양부모와 양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해 있는 사람을 상대방으로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5조).

관할법원

▪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4조).

심리

▪ 보호대상아동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0) 및 제50조].

▪ 조정이 성립하면 보호대상아동 입양 취소의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입양의 취소청구 기각

▪ 가정법원은 양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4항).

입양 취소의 통지 및 효과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취소의 통지

▪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3항).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취소의 신고

▪ 보호대상아동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소의 상대방도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69조제1항).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취소의 효과

▪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되며, 이 경우 입양 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7).

▪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취소 신고에 따라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4조 및 제10조).

1.3.4. 보호대상아동 입양 등에 대한 지원

입양가정 지원

입양가정 상담 및 복지서비스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 양부모나 양자가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 양자 또는 입양가정의 특성에 따라 상호적응을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항).

- 양육수당: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양육에 드는 비용
- 의료비: 다음의 비용 중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 √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 입양아동에게 장애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및 지급금액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양부모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여부,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 다만, 양부모가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양육보조금 등 지급

▪ 양육수당은 위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함)에 지급(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양육수당은 다음 달 20일에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의료비 및 그 밖의 양육보조금은 통지한 날이 속한 달에 지급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권자

▪ 양자가 된 사람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함)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본문).

▹ 다만,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단서).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

▪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자우편 주소 포함)

▹ 입양 배경에 관한 정보: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거주 지역명(「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의 명칭),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한 이유, 입양일 등

▹ 양자가 된 사람의 출생에 관한 정보: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 일시 및 출생장소 등

▹ 입양 전 보호에 관한 정보: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및 종전의 「입양특례법」(법률 제19555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등

▹ 그 밖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입양정보 공개의 신청 방법

▪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함)은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직접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이 경우 청구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정보를 통해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

친생부모의 동의

-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 본문).
  -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 단서).
-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3항).

입양정보 공개 요청에 따른 정보공개방법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말로 청구한 날을 말함)부터 다음의 기간 내에 청구인에게 입양정보의 공개 결과를 통지하고, 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청구인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외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15일 이내
  - 청구인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45일 이내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의 확인이나 정보공개 청구 대상 입양정보의 확인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하고 그 기간을 30일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 정보공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본문).
  - 비전자문서형태로 보유하는 정보: 문서의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
  - 전자문서형태로 보유하는 정보: 출력물의 제공 또는 복제한 파일을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

2. 국제입양

2.1. 외국으로의 입양

2.1.1. 외국으로의 입양 자격

양자가 될 사람

양자의 자격요건

▪ 양자가 될 아동은 18세 미만(「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7조제1항).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중 국제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아동(「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국제입양하려는 경우의 그 친생자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

▪ 양자가 될 아동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양의 승낙을 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1.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입양허가 청구 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여부 결정 전에 13세에 달한 경우에도 같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2.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 위 1.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위 2.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승낙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

▪ 가정법원은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에 따른 동의 또는 위 2.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입양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함). 이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해야 함.
-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 양자가 될 아동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 친생부모가 위 1.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위 2.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위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

▪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입양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친생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요건
>
> -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은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되고 표시되며, 양자가 될 아동(13세 미만)에 대한 입양의 승낙과 친생부모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

양부모가 될 사람

양부모의 자격요건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본국법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아동(「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도 갖추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양부모의 자격은 이 콘텐츠의 <국내입양-보호대상아동 입양-보호대상아동 입양의 자격>에서, 「민법」에 따른 양부모의 자격은 이 콘텐츠의 <국내입양-일반양자 입양-일반양자 입양의 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를 수령한 경우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자격 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2.1.2. 외국으로의 입양 절차와 효과

양부모와 양자가 될 아동의 결연

결연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본문).
  -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국제입양하려는 경우의 그 친생자(「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결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단서).

▪ 결연을 할 때에는 국제입양의 원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배경과 양육상황,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중앙당국 간 협의

국제입양아동보고서 및 그 밖의 서류 송부

▪ 보건복지부장관은 결연 후 국제입양아동보고서와 입양의 동의 및 승낙에 관한 정보, 결연에 관한 정보를 입양국 중앙당국에 송부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국제입양하려는 경우의 그 친생자(「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대해서는 입양의 동의 및 승낙에 관한 정보를 입양국 중앙당국에 송부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양부모의 입양 동의 의사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간 내에 입양국 중앙당국을 통해 양부모가 될 사람의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동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입양에 동의하면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를 작성하여 입양국 중앙당국에 송부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입양 절차의 진행 중단

▪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입양국 중앙당국에 국제입양아동보고서 및 그 밖의 서류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입양국 중앙당국에 알려야 하며, 국제입양아동보고서 및 그 밖의 서류와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아동에게 국내에서의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경우

▹ 친생부모, 법정대리인 또는 아동이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을 철회한 경우

▹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에 의심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입양국에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 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국의 중앙당국으로부터 입양 절차의 진행 중단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국제입양아동보고서 및 그 밖의 서류와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입양허가 청구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6조).

입양허가 청구 서류

1.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
2.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생,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3.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4.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다음의 서류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②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서류
④ 건강진단 및 심리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약물·알코올 중독검사 결과를 포함)
⑤ 신용조회 및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⑥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관한 서류
⑦ 최종학력에 관한 서류
⑧ 입양교육이수 증명서류
⑨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환경을 조사한 서류
⑩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해 확인한 서류

※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위 2.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함

▪ 양자가 될 아동이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국제입양하려는 경우의 그 친생자(「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민법」 제882조의2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본국법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67조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본국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입양허가 여부 결정

▪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해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가정법원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을 행한 자 또는 양자가 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아동의 입양을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

입양의 효과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은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 친양자 지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국내입양-친양자 입양-친양자 입양의 절차 및 효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효력발생

- 외국으로의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 또는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아동의 인도

- 아동의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그 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입양허가 인용심판 확정 후 양자가 된 아동을 양부모에게 직접 인도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 아동의 인도는 다음의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국외에 일상거소가 있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민국 외의 장소에서 아동을 인도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정

Q.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나요?

A. 외국으로 입양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제15조제2항제2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한 경우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갖는 복수국적자가 되며, 이 경우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 참조).

2.1.3. 외국으로의 입양 등에 대한 지원

입양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아동 적응보고서 수령 및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해 입양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해당 중앙당국이 작성한 아동 적응보고서를 수령하고 확인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적 취득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국의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양자가 되어 출국한 아동이 입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국적 취득이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알리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에 따라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할 때에는 입양된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적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가 소지한 외국여권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사후서비스 제공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사업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 모국방문사업

▹ 모국어연수

▹ 국외로 입양된 아동, 입양 후 성년이 된 사람 또는 양부모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홍보

▹ 모국 문화체험

▹ 그 밖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의 위기 극복 및 정착 지원을 위해 다음의 사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 체류 및 국적회복의 지원

▹ 취업 교육

▹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정착 지원

▹ 강제귀환 등 위기에 처한 입양인에 대한 의료, 주거, 생계 지원

▹ 그 밖에 입양된 사람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권자

▪ 양자가 된 사람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함)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 다만,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

▪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자우편 주소 포함)
- 입양 배경에 관한 정보: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거주 지역명(「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의 명칭),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한 이유, 입양일 등
- 양자가 된 사람의 출생에 관한 정보: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 일시 및 출생장소 등
- 입양 전 보호에 관한 정보: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및 종전의 「입양특례법」(법률 제19555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등
- 그 밖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입양정보 공개의 신청 방법

▪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함)은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직접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이 경우 청구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정보를 통해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

친생부모의 동의

▪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 본문).

-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 단서).

▪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3항).

입양정보 공개 요청에 따른 정보공개방법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말로 청구한 날을 말함)부터 다음의 기간 내에 청구인에게 입양정보의 공개 결과를 통지하고, 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청구인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외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15일 이내
- 청구인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45일 이내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의 확인이나 정보공개 청구 대상 입양정보의 확인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하고 그 기간을 30일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 정보공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본문).

▹ 비전자문서형태로 보유하는 정보: 문서의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

▹ 전자문서형태로 보유하는 정보: 출력물의 제공 또는 복제한 파일을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

2.2. 국내로의 입양

2.2.1. 국내로의 입양 자격

양자가 될 자격

양자의 자격요건

▪ 양자가 될 아동은 18세 미만(「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으로서,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아동이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8조).

양부모가 될 자격

양부모의 자격요건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제2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 양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

▹ 양자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다음 내용의 범죄경력이 없을 것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경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경력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위반한 죄에 따른 마약범죄경력

▹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

양부모교육 이수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부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2.2.2. 국내로의 입양 절차와 효과, 지원 등

입양의 신청 및 조사 등

입양의 신청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입양신청서(「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의 신청을 받은 경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양부모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송부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 가정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직장·이웃 등을 방문·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조사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인이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신국 중앙당국에 송부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4항).

중앙당국 간 협의

양부모의 입양 동의 의사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등을 수령한 때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동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그 사실을 출신국 중앙당국에 전달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입양 절차의 진행 중단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해야 하고, 이 경우 3.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입양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결연된 아동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자격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3. 아동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 및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갖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대한민국에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5. 양자가 될 아동이 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에 따라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한 경우 그 사실을 출신국 중앙당국에 알리고,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입양 절차의 진행 중단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

협약 체약국인 출신국으로부터의 입양

▪ 협약 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 또는 그 밖에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에 따라 입양이 성립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출신국 법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본문).

▪ 다만,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이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입양에 따라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데 동의하면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양부모의 친양자 입양으로의 효력 변경 청구에 따라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을 친양자 입양으로 전환하는 재판을 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단서).

협약 비체약국인 출신국으로부터의 입양

▪ 협약 비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에 따라 입양이 성립되면 외국재판의 승인에 따른 요건(「민사소송법」 제217조)을 갖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출신국 법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협약 비체약국인 출신국에서 입양재판 외의 방법으로 입양이 성립하면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각각의 허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입양의 신고

▪ 위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양부모 또는 양자는 협약준수입양증명서, 출신국이 발급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나 입양증서 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국내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및 신고

▪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을 위해 입국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본문).

▪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단서).

국내로의 입양에 대한 지원

입양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해 출신국 중앙당국과 협력해서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국적 취득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의 우리나라 국적 취득을 위해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 **Q. 외국에서 국내로 입양된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바로 취득할 수 있나요?**
>
> A. 대한민국으로 입양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
> 원칙적으로는 외국 국적을 유지하게 되고, 양부모 중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라면 입양 아동은 특별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2.2.3. 국내로의 입양 취소

입양 취소의 소

입양 취소의 청구

▪ 양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자신의 동의 없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입양 취소의 소의 상대방

▪ 양부모와 양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해 있는 사람을 상대방으로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5조).

관할법원

▪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4조).

심리

▪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0) 및 제50조].

▪ 조정이 성립하면 입양 취소의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입양의 취소청구 기각

▪ 가정법원은 양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입양 취소의 통지 및 효과

입양 취소의 통지

▪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소의 상대방도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69조제1항).

입양 취소의 효과

▪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되며, 이 경우 입양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7).

▪ 입양 취소 신고에 따라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4조 및 제10조).

> ※ 아동이 「민법」에 따른 양자(친양자가 아닌 경우를 말함)인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양자 입양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단서).

> ※ 일반양자의 취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국내입양-일반양자 입양-일반양자 입양의 취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